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86
----------	-------

발의연월일 : 2025. 9. 1.

발 의 자 : 박수영 · 권영세 · 김미애
김승수 · 김재섭 · 박성훈
박충권 · 서일준 · 서천호
이성권 · 이인선 · 최은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기준은 소유주식의 비율 · 시가총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대주주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주식시장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으며, 대통령령에 규정된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대주주 기준은 과세 대상의 범위가 넓어 주식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대주주의 기준을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2 신설 등).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 본문 중 “대주주”를 “주권상장법인대주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제94조의2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이하 “주권비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로 한다.

1) 제94조의2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이하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2(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①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양도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

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100분의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100분의 4]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총액의 합계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

타주주를 주권상장법인대주주로 본다.

③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주권비상장법인대주주”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의 합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주권상장법인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대주주로 본다.

⑤ 주식등의 시가총액의 계산, 주권상장법인대주주 및 주권비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주주(제94조의2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 및 주권비상장법인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제118조의9제1항제2호 중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를 “대주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94조 및 제94조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 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 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 생하는 소득	3. ----- ----- -----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 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 ----- -----
1) <u>소유주식의 비율 · 시가 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u>	1) 제94조의2에 따른 주권 상장법인의 대주주(이하 “ <u>주 권 상 장 법 인 대 주 주</u> ”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u>대주주</u> 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 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 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 식등. 다만, 「상법」 제36 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	2) ----- <u>주권상장법 인대주주</u> ----- ----- ----- -----. ----- ----- -----

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
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
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
·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
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
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
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
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
한다.

다. (생략)

4. ~ 6. (생략)

② (생략)

-----.

나. -----
-. -----제94조의2에 따
른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
주(이하 “주권비상장법인
대주주”라 한다)-----

-----.

다.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4조의2(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①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양도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소유한 주식
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
등의 경우 100분의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100분의 4]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관계
에 있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
권상장법인기타주주”라 한다)
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
총액의 합계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제
1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 이
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주
권상장법인대주주로 본다.

③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
에서 “주권비상장법인대주주”
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
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
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
0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가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

	<u>총액의 합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 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주권상장법인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대주주로 본다.</u> <u>⑤ 주식등의 시가총액의 계산, 주권상장법인대주주 및 주권비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 ----- -----

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
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
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
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10. (생략)

1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
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
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2) (생략)

나. (생략)

12. ~ 14. (생략)

② ~ ⑧ (생략)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
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
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
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가. 대주주(제94조의2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 및 주
권비상장법인대주주를 말
한다. 이하 같다)가 양도
하는 주식등

1)·2)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2. ~ 14.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
세의무) ① -----

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생략)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u>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u> ② (생략)	----- ----- ----- ----- -----. 1. (현행과 같음) 2. ----- -----<u>대주주</u>----- ----- ② (현행과 같음)
---	---